

제42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29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3.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8.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7)
1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0)
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17.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1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1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2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2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23.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24.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25.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26.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27.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28.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29.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 

### 상정된 안건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	3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	3
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	8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	12
3.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	19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	19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	19
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	19
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45) .....	19
8.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	19
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	19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	19
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	19
29.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	32

---

(10시37분 개의)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서 아까 여야 간에 조정된 일정을 참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박범수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오늘 법안 충실히 설명드리고 정부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당초 산림청 법안도 심사계획에 있었는데 대구 산불 등 또 예결위 대응이 있어서 산림청 심사를 저희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는 말씀을 좀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 시작하기 전에 원래 당초 의사일정 중에 연번 1번·2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거기의 정희용 의원안, 박덕흠 의원안은 예정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 연번 중에 15·16번 정희용·이양수 의원안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우법을 심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결의안 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 시간이 된다면 또 추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그 조정된 안을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사실 지금 대선 국면이고 우리 위원님들 각자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심사가 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협력과 협조 요청을 바랍니다. 가능하면 양당 간에 한 분씩 발언을 해 주시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손들어 주시면 그 발언을 받아서 또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3)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5)

(10시40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정희용 의원, 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임재금** 심사자료 2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등 보상금의 수급권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지급 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 받을 권리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상금 지급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인데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보상금 배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당사자들 간에게만 맡기면 불균형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정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압류 등 금지 관련해 가지고는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23년부터 실시한 자율방역대책을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계획 수립·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함으로써 방역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의무화돼 있는 방역관리계획이 부령에 포함되도록 있고 시·도지사의 승인 기준이 미비해서 자의적인 불승인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신다면 1항과 2항을 보시면 수립·승인·이행 이런 순서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제3항에 보시면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점검 주체에는 장관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 미이행자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하는 사람에는 장관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관리 의무 강화입니다.

개정안은 방역교육 실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점검 의무 내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조 제목이나 일부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살처분 명령 근거규정을 2개의 항으로 분리하고 살처분 등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사항을 각각 해당 조에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살처분 명령 근거규정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의 복잡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다만 현행법 제20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인용조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개별 조항 내 비용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이걸 반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입니다.

개정안에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 계획 수립 의무 등을 신설함에 따라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보시면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유사 입법례를 봤을 때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만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부분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입니다.

박덕흠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요. 그런데 정희용 의원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사항이 있어서 그 위헌성을 조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희용 의원안 부칙 제2조 적용례 부분은 제일 아랫부분 보시면 시행일 전에 살처분을 하고 시행일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이 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수정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먼저 2페이지 48조(보상금 등)입니다. 이 건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수용을 합니다. 아마 3페이지에 있는 8항 압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하고 같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조금 적절치는 않다, 그래서 이것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 옆의 농식품부 의견은 압류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압류를 막는 것도 나중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을 저희들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내용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문구를 조금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수정의견 보시면 이게 원래 개정안도 그렇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이것을 축약해 놨는데 사실 뒤에 가면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또 축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를 굳이 축약할 게 아니고 여기서 축산계열화사업자를 축약하고 ‘가금’은 그냥 앞에 붙여도 사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축산계열화사업자만 축약하는 것으로 고치면 사실 문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문구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내용인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축산계열화사업자 축약을 앞에서 해 버리면 여기서는 축약을 안 해도 되니까 문구가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조의3 1항 말미의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 문구를 조금 고치면,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현행 조항이고요. 개정안을 보시면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를 조금 수정을 하면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을 앞으로 당겨서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문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이것은 저희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18페이지 20조 내용입니다.

20조 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내용하고 저희 정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조항도 앞의 개정 내용에 따라서 반영된 거여서 정부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

그다음에 부칙에서 ‘이후 살처분하거나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에 고쳐진 내용이 소유자한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계열화사업자한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문구를 조금 더 단순화하면 그냥 ‘이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2개가 다 포함되니까 문구를 그렇게만 조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없으면 조문 심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1개만……

48조 제8항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삭제 의견이라는 뜻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다음 19쪽 농식품부 의견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농식품부 의견인데 이 내용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지금 전문위원 의견대로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복……

○**윤준병 위원** 농식품부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조문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살처분·도태 보상금의 수급권 조정 등과 관련된 항에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체계·자구는 조금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장을 부드럽게

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정부 측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지요?

○**임호선 위원** 여기 압류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준병 위원** 삭제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삭제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삭제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수정의견이 있고 정부 측 의견이 있는데 지금 전문 위원실에서는 오히려 개정안이 좀 심플하다라는 의견인데 개정안으로 처리……

○**윤준병 위원** 정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구만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생각이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그 문구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조정하겠습니다.

문구 문제는 그것까지 여기서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문구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큰 틀에서 수정의견을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8페이지 살처분 근거규정 분리 및 비용 지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과태료 부분 특별하게 의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수정의견 놓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칙 관련해서 다른……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것도 문구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수정의견 놓고 문구 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방망이를 두드리는 건 마지막에 문구 조정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했지만 체계·자구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 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18)

(10시55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7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21대에도 제출된 바 있고요. 주요 내용은 농식품이용권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농식품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돼서 2025년에 본사업화가 됐고 금년도 예산에 381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 제8조의2가 공급 대상을 '식품'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 23조의3에서 '농식품'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금 대상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청에 의해 지급됨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가 논의사항으로 현재 개정안에는 없는데 유사 입법례를 보면 부정발급, 사용처에서 이용권을 거부할 수 없거나 수급자의 이용권 판매·대여,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4페이지의 제1안으로 농식품이용권의 사용관련, 부정사용 관련 내용이 있고 2안은 현행 유지입니다.

5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을 별첨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농식품이용권 바우처 사업과 본사업을 비교했는데 25년 본사업에서 보면 대상과 관련해서 소득기준과 대상가구가 축소되었고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대상 품목은 10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제2항에서 협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요청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등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을 ‘관계 기관의 장’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3항은 타당해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이용권의 전담기관 지정 등의 근거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필요 의견입니다.

전담기관이 ‘플랫폼 구축·운영’이라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를 했고, 현재 aT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의 ‘제1항’을 ‘제5항’으로 자구 수정입니다. 인용이 잘못되었습니다.

12페이지의 과징금 처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석전문위원이 추가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에너지바우처나 환경바우처에도 이러한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별칙 의제 관련해서 전담기관의 임직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는 농식품바우처 플랫폼 교육을 15페이지의 부칙과 관련해서 조속한 사업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6개월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먼저 2페이지 정의 조항의 농식품이용권 정의하는 것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3페이지 23조의3 농식품이용권의 지급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4페이지 농식품이용권 사용 관련해 가지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1안, 2안이 있습니다. 2안은 현행 유지인데요.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5페이지의 별칙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식품이용권이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4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 것을 위배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그러니까 형사벌을 준다는 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안으로 그냥 현행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페이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10페이지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부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으면 조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페이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인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의 23조의3항에 '신청을 받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한 방식만 가능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일괄 지급은 안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요건이 되더라도 이것은 재정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신청에 의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만약에 몰랐을 때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정부가 이것을 일일이 대상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오지급한 것을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은 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신청 베이스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신청으로 갑시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신청으로 가되 아까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점검을 하는 주기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좋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빠진 사람이 없는지 지자체하고 점검을 하고 사후평가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점검할 때 그 의무를 넣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여기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여기에 저

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신청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누락된 자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것은 포함해 주시지요.

○**김선교 위원** 차관님 말씀도 옳은데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국민기초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한테 일정 금액이 다 나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현황이 다 파악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꽤 생길 거예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가 과다해져요. 그게 여러 가지 절차 거쳐서 신청자 받고 뭐 하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면 상당히 편한데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도 없고. 이것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이게 대상을 생계수급 대상자 전체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생계수급 대상자 중에 영유아가 있거나 임산부가 있거나 청소년이 있거나 이런 경우로만 제한을 해서 합니다.

○**김선교 위원** 글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대상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지 신청을 못한 자는 못 받고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다른 업무도. 그래서 한번 잘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한선교 위원……

○**문금주 위원** 김선교. 한선교는 탤런트……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입니까?

(웃음)

갑자기 탤런트가 생각나서……

김선교 위원님이나 제 문제의식은 잘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누락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영을 만들 때……

○**소위원장 이원택**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 조항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벌조항 관련해서는 지금 4만 원 위반하는 것은 정역 1년 이하, 1000만 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건 그냥 현행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4페이지도 그냥 현행 유지로……

○**소위원장 이원택** 예, 현행 유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이건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페이지도 수석전문위원 의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도 동일한 겁니다, 과징금 처분.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4조 마찬가지고요.

부칙도 수정의견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6개월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2페이지도……

○소위원장 이원택 아, 12페이지가 빠졌나요? 이건 얘기했습니다, 과징금.

제가 13페이지의 64조만 얘기하니까 빠진 걸로 아는데 12페이지도 아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보고요.

체계·자구는 저희한테 맡겨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11시07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8번입니다.

목차에 보시면 총 10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농촌공간계획 수립가능지역 확대부터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 개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현행법은 농촌지역 시장·군수 또는 특별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그 주체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추가해서 표에 보듯이 17개 자치구의 구청장도 이 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그 권한과 업무가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17개 자치구가 도표로,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문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자치구의 구, 구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저의 수정의견은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로 명시를 해서 서울시 또는 인천시의 구청장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1쪽까지 관련 시장·군수·구청장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재량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검토의견의 표를 보시면 17개 이번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사항에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으로 하고 등 포함 시 21개 시를 협행 의무에서 재량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4항은 개정안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25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시군구에 기초정책심의회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고 관할 시도에 광역정책심의회를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선택적으로, 임의적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자체 38개가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위해시설 명칭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저의 검토의견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의 표를 보시면 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농촌위해시설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확대하고 있는데 협행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위해시설 관련 조문을 일괄적으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28페이지 하단에 축산단체의 의견과 29페이지 상단에 또 축산단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행계획 승인 전 협의 대상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미제출 시 협의 완료 의제하는 내용인데, 저의 수정의견은 관계 행정기관에 행안부와 국토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비 편성이거나 도로 관련 사항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32쪽의 3항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3쪽은 인용조문 잘못돼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지구로 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개정안은 ‘농업·농촌경관지구’인데 이 명칭이 협행 자연경관지구, 36페이지에 보시면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랑 중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농촌경관활용지구’로 명칭을 수정해 보았습니다.

37페이지에 고창과 하동의 사례가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민협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검토의견의 표를 보시면 주민협정 체결 대상자가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주민 등이 추가가 됐고 그 밑의 표를 보시면 주민협약 사항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추가했습니다. 다만 주민협정 체결의 요건을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저의 의견은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39페이지에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1안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건축법이나 경관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또는 5분의 4 동의, 제3안은 요건을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의 사업 관련 준공공사 및 준공인가 규정인데요.

44쪽, 사업 완료 후에 준공공사 및 준공승인의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7페이지, 중앙정책심의회 위임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9페이지에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지정 방식이 있는데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지정기관이 총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4개소가 있습니다.

52페이지, 부칙입니다.

6개월 후에 시행하되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일 준비 등이 필요해서 6개월로 수정하되 시행계획 승인이나 확정, 협의간주 등은 즉시 시행하고 일부 경과조치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 의견……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마음이 급하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3페이지의 농촌지역을 보유한 자치구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7페이지 조문별로 봤을 때 2조,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문 정리하는 거니까요, 9페이지부터 계속 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도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23페이지, 10조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25페이지인데요.

33조 이게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설치 조항인데 25페이지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 내 주신 게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표현을 제 생각에는, 문구를 바꿔 본다면 ‘이런이런 경우는 이렇게 둬라’ 이런 식으로 문구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시군구는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두고 특별자

치시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두며 해당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광역정책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두는 조항으로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 이것은 '안 둬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농촌위해시설'에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이게 개정안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이렇게 해 주셨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이렇게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농촌위해시설'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고. 이게 개정안 취지대로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위해시설이 아니고 환경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데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간계획을 해서 농촌을 조금 더 정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대로 해 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받고요.

29페이지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 같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도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입니다.

33페이지 마찬가지고요.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게 주민협정 체결하고 관련되는 건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 주신 게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주민협정을 체결하기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게 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할 때 전원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할 경우에 주민협정 체결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번 더 해 보고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반수로 할지 3분의 2로 할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개정안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보완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이것은 앞에하고 맞춰서 그러면 체결 요건 및 인가 절차 개정안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44페이지, 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하고 같습니다.

47페이지도 개정안대로 동의하고요.

49페이지 이하도 전부 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이 법의 성격이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한, 소위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법에

상응하는 법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서 이미 농촌지역과 관련돼 있는 영역들, 소위 자치구에 해당되는 내용은 농촌지역도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도록 이미 규정화돼 있는데,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춤춤하고 그 법체계가 훨씬 더 완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지역적인 내용을 넓혀서 이미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건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는 법인데 이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걸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법하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법체계상으로 오히려 완벽하게 들어 있고 그 도시계획법 내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특수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까지 이걸 또 포섭해 가지고 이중적인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퀘스천이 일단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다음에 27쪽, 농촌위해시설 이건 소위 엄격하게 해서 그거는 농촌시설에 못 들어오도록 관리를, 제대로 방어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윤준병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는 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용어 자체부터도 기존에 한 내용이 저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관농업지구 용어 바꾸는 거 이것도 굳이 우리가 자연경관, 생활경관, 농업경관 이렇게 바꾸지만 경관농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경관농업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또……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닌데 용어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공간 지원기관과 관련해서 용어는 뭐 그렇다손 치고.

협약 체결하는 데 주민 동의를 받는 거 이것도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건 정책적으로 지자체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니까 그 내용을 시행령이나 이쪽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좀 보류했다가 이후에 한 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 해당 조문 때 쟁점별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임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요. 이게 17개 자치구 구청장을 추가하자는 내용인데 결국 예산 문제에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 쪽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호선 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한 부분이 사실은 시군구 중에 주로 군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민원,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농촌위해시설로 현재 현행법에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군 단위 지역에서 지금 민원이 폭발적으로 쇄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더디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측면이나 또 국가 예산,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군 단위 지역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법의 취지 자체도 그렇고 재구조화라든지 재생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 이 입법 목적 자체가 군 단위에 어느 정도 좀 형평,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자치구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위에서도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법하고의 관계, 이게 사실은 저희가 농촌공간 계획이라고 하는 농촌계획제도를 따로 만들게 된 이유가 도시계획법하에서 농촌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난개발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전북의 장점마을 같은 경우에 집단 암 걸리는 사태도 있었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법하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농촌공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충돌이나 이런 문제는 국토부하고 해결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위해시설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해시설의 경우에는 사실은 축산 쪽에서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축산이 위해시설이라는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계속 밀려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환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경관농업지구를 농업·농촌경관지구로 바꾼 거는 경관농업 그러니까 농업으로만 한정해서 경관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농촌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서 용어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했었고요.

협약 체결에 대해서 전체 동의가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치구를 포함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고민은 이겁니다. 자치구의 농촌마을, 농촌주택, 그러니까 농촌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소외되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

상으로는 포함을 시켜 주고 장기적으로 예산 배분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 늘리는 거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은 조문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조문별 쟁점에서 또 의견을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저도 윤준병 위원님에 아주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제사항이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규제라기보다는 이런……

○**김선교 위원** 절차 뭐 이렇게 해서 시간도 낭비가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효과보다는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김선교 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냥 가면 되지 이것 굳이 이렇게 해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왔는데 도시계획에는 농촌에 대한 관점 그게 포함돼서 농촌을 뭔가 새롭게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농촌에 대한 개발이나 농촌에 대한 정비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법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선교 위원** 그게 왜냐하면 심의위원이라고 있지요, 그런 데 가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김선교 위원** 그게 지자체마다 틀려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유지 이런 사람들이 돼 가지고 외려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류를 시켰다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해서 보완해 가지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조문별로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팬참으시겠지요?

○**문금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고 다음에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하자고 그러는데 굳이 조문……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이거 이양수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 전체 다 미루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아니, 그래도 이걸 더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빨리 이 법이 개정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야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일단은 쟁점이 자치구 문제, 자치구 부분은 좀 보류하자는 의견이지요? 거기는 타 법과의 관계적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규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좀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선교 위원** 아니, 차관님이 난개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 모아 주시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더 검토할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그런데 이걸 전체로 보류하는 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정희용 위원** 보류했다가 정리해서 다시 하시지요.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럴까요? 저는 일부 빼고 또 넣을 거 넣으려고 그랬더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자치구가 빠지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리니까요.

○**김선교 위원** 자치구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좀 보완해서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3.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6)

7.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5)

8. **한우산업기본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0)

9.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9)

1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11시30분)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한우산업 지원 관련 법안과 축산법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3번과 4번이 있는데요 3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3번 6페이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달에 심사를 한 번 했고 3월 달에 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주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문금주 의원안을 토대로 내용을 통합·정리하되 일부 조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이 있으셨고. 특히 수정란 착상 소가 한우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

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한우 산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한우 반출 절차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 6개인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조문이 있는데요. 조문은 문금주 의원안을 토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 한우의 정의와 관련해서 수정란을 젖소에 착상을 시켜 태어난 소의 한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8페이지에 저희가 농식품부 등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농림부의 경우 수정란 이식 방식으로 생산된 한우가 연간 94만 두의 사오천 마리니까 0.4%에 불과하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어미소에서 태어난 소로 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청회 진술인 중 이석현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수정란 이식을 통해 생산되는 한우 현황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총 93만 두 중에 젖소대리모가 4000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한우의 종류가 일반한우, 칡한우, 제주흑우 등으로 종축개량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7호에 종모우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모우 뜻을 한자로 병기를 했습니다. 씨를 받는 수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명암 된 부분인데요. 그때 박덕흠 위원님께서 자금의 출처별 의미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의원실에 확인해 보니 한우 사육규모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금의 출처별은 삭제해도 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명암 부분에 소위 논의 21조인데 송옥주·박덕흠 의원안에 대해서 군급식 및 학교급식의 한우소비 목표량 설정 등인데 이것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문금주 위원님은 포괄적 시책 마련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안처럼 할지 아니면 이원택·문금주 안으로 할지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위 논의안 27조 3항과 관련해서 임호선 위원님께서 한우의 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구를 수정했는데 저희 다시 원안 유지를 하되 DNA를 한글로 병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안 11조 관련해서 종빈우라는 표현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 할지도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에 방금 말씀드린 한우 국외반출 조항과 관련해서 별칙이, 임미애 의원안이 있는데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 입장은 일단은 이거를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우협회를 제외한 다른 축종의 단체들이 전부 다 한우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한우라는 그거를 다른 축종이나 다른 품목으로 바꾸면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축산법하고 중복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다른 축종의, 무슨 메추리가 됐든 사슴이 됐든 토끼가 됐든 이 기회에 법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단체들한테 이야기했던 것도 법을 축종에 따라서 만들려면 한우에만 특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우법을 반대하지만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한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검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 정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법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한우법을 만들면 한우법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제가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한우협회에서, 그래도 이 법을 만들자고 제기했었던 조직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한두 개라도 한우에 맞는 조항을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그 요청을 한우협회에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우협회에서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나서서 법을 만들기는 그렇고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으로 법을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으로 다시 법안을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 소위원장 이원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 윤준병 위원 차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꽤 정제되지 못한 발언을 하시는데 한우법과 관련된 내용이, 물론 종축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다고 그래서 한우의 특수성이, 한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갖고 소법이라 하지 않고 한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메추리나 이런 축종까지 개별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다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한우협회에서 자기와 관련된 법을 발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의하는 것 까지 기다려서, 제안이 안 들어와서 가지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자세입니까, 그런 발언이? 아니, 행정에서 이익단체보다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진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발의해서 업계를 도와주고 한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제안이 없으니 가지고 있지만 안 한다? 저는 그런 자세는 옳지 않다 지적하고요.

더더군다나 이 안과 관련해서 예전에 심의할 때도 그때도 농식품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내겠다고 그래서 보류를 시켜 놓은 거였어요. 그러면 냈어야지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도과했는데 그걸 아직도 제출 않고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아니, 법안 발의돼서 의원들이 이걸 하자고 했는데 그걸 안으로 가지고 있다면서 제안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오만한 자세예요? 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은 예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이후에, 저는 이거 입법정책

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됐던, 여건상 개별법을 제정하기로 얘기 했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발의된 다음에 이 법안이 의결돼서 법안으로 성립한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이 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농식품부가 그리고 있는 그런 방향대로 유도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그때 가서 더 추가하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충분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우농가들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의 비교를, 이거는 돼지, 양돈하시는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값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다녀 보면 지금 한우농가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고금리·고임금으로 인한, 또 사로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로 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우농가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지금 키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 가지고, 벌써 우리가 이 한우법 그동안에 차관님이 대안을 내놓으신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차관님,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법으로 충분히 담아서 해 보고 또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농림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22대가 국회가 되고 1여 년간 농해수위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우법 제정을 위해서 법안도 발의를 하시고 많은 고민도 하시고 또 우리 한우가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토종 자원으로서 유전적 가치도 있고 또 한우산업의 특수성도 있고 지금 한우를 키우시는 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금번 법안 처리에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또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윤준병 위원** 지금이라도 안 제시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일단 두 분 위원님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입장에 대해서 총괄 답변 듣고 법안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저는 기본적으로 개별 축종별로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런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해 왔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한우협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우협회가 이 법을 만들자고 했으면 좀 적

극적으로 한우협회에서 의견도 제시를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제가 한우협회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협회가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한우법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우농가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한우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축종에서 그런 얘기를 안하게 하려면 한우에 맞는 법, 한우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우는 전부 다 정액을 따로 만들어서 팔고 인공수정을 합니다, 다른 축종하고 다르게. 그래서 우수정액 표시제나 인증제를 도입을 하자, 그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자. 그다음에 유전자원의 형질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세 번째, 지금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한우개량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한우개량사업소의 설치근거, 전담기관으로서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거기에 할 일들, 업무 위탁할 일들을 법으로 규정을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에 한우만 유일하게 3년 이상씩 키우는 거니까 수급조절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3년 전부터. 그래서 송아지 때부터 수급의 전망을 해 가지고 3년 후에 과잉이 우려가 되면 암소를 도태한다든가 암소의 비육 전환을 명령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제도를, 한우의 특별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자 이런 제도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한우를 30개월씩 이상 키우니까 메탄가스 뿜어내는 주범이라고 비판을 받으니 단기비육을 하는 한우 그런 것들로 R&D 투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렇게 단기비육하는 것에다, 탄소중립이나 이런 걸 기여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표시제라든지 인증제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조항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유일하게 한우만 송아지를 거래하는 가축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시장을 둘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두고 거기에서 지금 6개월 내지 8개월에 파는데 월령표시라든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의 근거를 두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우법을 만들면 한우에 맞는 특별한 제도들을 저희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듬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같이해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이원택 의견 잘 들었고요.

저도 한말씀 드리고 법안심사 들어가겠습니다.

법체계상 한우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본질은 특수성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산업의 진흥이, 한우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진흥적 관점이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축종별로나 품종별로 특수성이 있는 식물들이 많지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수성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기준으로 법안 체계를 완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법안이 나올 수도 있습

니다. 축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식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한우산업 또는 한돈산업 등 여타의 농업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1차산업 농업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중에 이것을 정말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키울 어떤 산업의 진흥적 관점에서 이 법을 만들거나 말 거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기후위기와 연관시켜서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과 관련된 것을 보존하는 것은 보완하면 됩니다. 가면서 우리가 놓쳤던 거라든가 이런 건 보완하면 되는 거고 이 산업을, 적어도 한우산업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한번 키워 보자라는 취지라는 차원이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고충과, 한우 파동과 그 고충과 한우농가의 어떤 근심도 덜어 드리는 측면들도 있지만 본질은 저는 진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협회의 능동성 부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실 차관님하고 저하고 대화의 과정에서 협회가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차관님이나 장관님께 여러 차례, 제가 거부권이 행사되고 일관되게 해 왔던 안을 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왔거든요. 거꾸로 국회와 농식품부 간의 관계에서 능동성 부분을 저희는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협회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저도 협회 쪽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측면도 저희가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팬참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로 보면 첫 페이지가 7페이지인가요? 7페이지에 기본은 박덕흠 의원님하고 문금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이 기본이 되는 것 같고 문장이나 이런 것은 문금주 의원님 대표발의한 걸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겠고 쟁점이 있는 부분 정리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가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 부분입니다.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쭉 가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라고 그랬거든요.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 대통령령에서 또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걸 넣는다 만다 하면 또 쟁점토론이 되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11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고, 이건 선언적인 조항이기는 합니다만, 5조(종합계획의 수립)도 있고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게 축산법에도 축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한우법에서 이걸 또 두게 되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한우법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

립해야 되고 축산법에 따라서 한우하고 관련되는 종합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조항인데 이 조항을 그대로 두어도 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조항들은 전부 다 배제하는 근거를 따로 두어야 됩니다. 이 법 한우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만들면 그러면 축산법에 의해서 그것도 만든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의 간주조항들을 추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건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간주조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축산법과 이 한우법과의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중복 문제를……

○**소위원장 이원택** 중복 문제 그건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12페이지 5조 7호의 종모우 이것 문제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페이지 관련해서 위원님들, 문금주 의원안하고 박덕흠 의원안의 자금의 출처 이건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금주 의원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18조의 소비촉진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님 안하고 송옥주 의원님 안이 추가가 돼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이나 세부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의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중에 박덕흠 의원안하고 이원택 의원안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진출 여부를 어느 수준에서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26조와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안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임호선 위원** 박덕흠 의원안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26조에 기업의 생산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러나 자본과 기업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잡자 이런 의견이고 박덕흠 의원님 안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내용이 똑같네. 원래 박덕흠 의원안이 셨는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지금 박덕흠 의원님은 참여 제한이고요. 밑의 이원택·문금주·임미애 의원안은 상생협력 방안, 왼쪽의 박덕흠 의원안 밑에 그렇게…… 그 밑에 있는 상생협력 방안보다는 기업 참여 제외를 하니까요.

○**윤준병 위원** 생산참여 제한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소위안으로 박덕흠 의원안을 제안한 거지요. 24쪽에……

○**소위원장 이원택** 아, 그렇구나. 내 기억에 박덕흠 의원님 안은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내가 기억을 했는데……

26조의 소위원회 논의안으로……

○윤준병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어떻습니까, 문금주 의원님?

○문금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팬참으시겠습니까?

○문금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26조 소위 논의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가서 이 부분 아까 디엔에이 한글로 추가하는 건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건 맡겨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25페이지 이게 쟁점이 뭡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25페이지의 박덕흠 의원안 11조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자료 만들 때 이 부분이 누락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안 11조 1항부터 3항을 받게 되면 소위원회 논의안 27조에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내용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른 조항하고 충돌되는 게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특별히 없고 박덕흠 의원안 1항을 3항으로, 2항을 4항으로, 3항을 5항으로 하고 지금 소위 논의안 3항을 6항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항을 순연시키면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그래서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특별한 의견 없으면 추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6페이지의 별칙 조항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별칙도 추가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원택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났지요?

그러면 아까 축산법과 한우법과의 어떤, 거기에 종합계획을 한다든가 중복되는 법이 있는데……

○윤준병 위원 그것 보춰 규정에다 한 조항 넣어서……

○소위원장 이원택 보춰에다가 한우법에서 세운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걸 간주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문금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니까 그 1년 안에 별도의 개정안을 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추가 개정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윤준병 위원** 일단 보칙에다가 축산법의 몇 조 몇 조 몇 조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열거해서 그 내용의 이쪽에서 수립된 것은 그쪽에서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그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여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하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이원택** 여기 4조 있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아니, 이게 이 법에 따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법을 배제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법에 따라서하게 되어 있는 것은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보칙에다가, 축산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조문이 있잖아요. 이것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예시로 간주규정 넣어 가지고, ‘이 법에서 수립된 내용은 그 법에 의해서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조항을 하나 넣어 주면 되거든요, 그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런데 지금 소위 심사자료 4번의 조경태 의원님 발의안하고 현행 축산법 개정안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겹치고 있어서요. 그렇게 간주규정으로…… 계획 외에도 국가의 책무라든가 축산업정보시스템이라든가 연구·개발, 조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간주규정으로 하기에는 되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대부분의 조항이 다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래서 일단은 시행일이 1년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되……

○**윤준병 위원** 내용은 ‘이 법에서 수립된 내용은 축산법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보칙에다 보완하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께서 의결받아서 다음에, 위임해 드리니까, 그 내용 넣어서 문구 좀 보완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요.

○**소위원장 이원택**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정부 측이 아까 한우 특수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개정안도 차후에 제출할 것 같고. 이 간주조항 부분은 일단은 축산법의 의무를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고 이건 이것대로,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건 맞지만 그건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윤준병 위원** 이것 의결하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그 뒤의 조경태 의원안하고 제가 법안 발의한 게 있잖아요. 이 법안은 조금 심사를 보류해서…… 그것 다음 심사 범인가? 아닌가요? 축산법 개정안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던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축산법 조경태 의원안이 개정안이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다음 심사해야 되는 거지요?

○**윤준병 위원** 아니요, 축산법 일부개정안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병합심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실장 김건식** 지금 상정은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오늘 심사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병합해서 하는데 이 한우법 제정안이 돼 버리면 조경태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법안하고 내용적 충돌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충돌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이 법안은 마무리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면 충돌되는 게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늘어나니까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아까 그 법에 따른다는 것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일단 간주규정을 두는 것도 좀 부담이 덜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문금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4조에 한우산업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 법의 의무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이걸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은 그 법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간주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아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금 이것 끝나고 나면 그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여러 가지 충돌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심사를 좀 보류하고 간주규정을 두고 아까 정부 측에서 한우의 특수성과 관련된 보완할 것하고 그다음에 축산법 개정안을 같이 그때 추가로 심사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문금주 위원** 여기 문구 ‘제외하고는’ 이것을 ‘불구하고’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요?

○**문금주 위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소위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 법에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것 중복될 소지가 있는 거야……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일반적으로는 이런 법규정은……

○**문금주 위원** 아니, 한우에 관련해서는 이 법이 최우선이다 이 말이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정확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만, 제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말고 현행 축산법하고 이 법하고 충돌되는 게 어떤 조항이 있지요? 아까 개정안 말고.

○**윤준병 위원** 충돌된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부칙이나 거기에 해 가지고 ‘한우하고 관련해서 축산법에 있는 이 조항, 이 조항,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넣어 주는 게 중복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현행 축산법, 개정안 말고 현행 축산법에 중복되는 조항.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많습니다. 대부분, 아마 종합계획도 축산법에서 종합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축산법하고 현행 한우법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지금 체크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금 소위 심사자료 4번 자료 5쪽과 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과 6쪽 보면 왼쪽의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안 기준으로 1조부터 24조까지 다 나와 있고 조경태 의원안 축산법……

○**소위원장 이원택** 몇 페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5페이지입니다. 심사자료 4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지금 현행 축산법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 지금 한우법하고 중복되는 것이고요. 3조의2 축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신설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복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미 축산법에 축종별로 계획 수립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중복될 거고요.

그 외에 출하 조절, 수급 조절,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이렇게 좀 하지요. 이거를 다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 부칙에다가 예를 든다면 축산법 몇 조 몇 항 등 해 가지고…… 등 한우법과 중복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한우법을 그 간주 규정을 그렇게 뒤 버리면 되지요.

○**윤준병 위원** 이 법에서 이행한 내용은 축산법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지.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간주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금 이 법이 한우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을 두고요. 부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장 이원택** 뭐뭐 등……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런 규정은 한우법에……

○**소위원장 이원택** 한우법에 따라서 한 걸로 간주한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준병 위원** 수립된 또는 한 내용은 축산법에 의해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수립된 내용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 넣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정리하면……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 부분은 정부와 상의하고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아무튼 우선하여 적용한다로 수정을 하는 게……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결정하기 전에 문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결의안 심사를 먼저 하지요, 결의안 수정된 게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위원장님, 저기.....

○**소위원장 이원택** 그 사이에 정리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것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사일정 10번은 원안으로..... 여기 소위 자료에 포함돼 있는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10번 축산법,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게 송아지 생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한우법에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발의한 건 알고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 내용이 지금 축산법이 한우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쪽은 빼 줘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거는 원안으로.....

○**소위원장 이원택** 아, 그럴까요?

○**정희용 위원** 일단 이 법 통과 여부를 봐 가면서 갖고 있다가 이것 되면 그때 바꿔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윤준병 위원** 병합 심사를 해서 넣어 줘야.....

○**문금주 위원** 일단 통과를 시키면서 부칙이랄지 자구 조정은 위원장이 하는 걸로 해.

○**정희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 10번 때문에 그렇지.

○**소위원장 이원택** 10번 안이 원래 지금 우리가 법안 자료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0번 안이 소위 심사자료 3번에 지금 101쪽하고 102쪽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조경태 의원하고 제 거하고. 몇 번 심사자료지요, 이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3번 자료에요 101쪽.

○**윤준병 위원** 병합심사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용 위원** 지금요?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심사를 안 하면 뭐가 문제가 되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소위 논의안에는.....

○**윤준병 위원** 발의되고 폐기돼 버리는 수가 있지.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지금 축산법에서 송아지안정 사업을 삭제하자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이것만 좀 삭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그렇지 않아요?

○**정희용 위원** 이원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축산법의 내용 중에서 한우법에 안 들어간 내용이 있을 건데.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송아지안정 사업이 한우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산법에서 빼자는 거예요, 지금.

○문금주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 아니야?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수석전문위원님, 시간 관리상……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라고 지금 19페이지……

○소위원장 이원택 있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이 조문이 지금 소위원회 논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그러니까 저기를 삭제해야 여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축산법……

○문금주 위원 아니, 축산법하고 중복이 많다 그러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잠깐 잠깐……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삭제하는 거니까. 이거는 삭제해 줘야 맞을 거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삭제해 줘야 맞습니다.

○윤준병 위원 축산법에서 그 부분만 삭제하자는 얘기잖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여기까지 심사하고 조경태 의원님 안은 별도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게 상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 아까 안 하셨지요? 했던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보고는 안 했는데……

○소위원장 이원택 수석전문위원 보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둑어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보고했던가요?

○문금주 위원 아니, 이것 지난번에 다 논의가 됐던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지난번에 소위원회 논의 안에……

○윤준병 위원 3에서 10번까지 짹 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원택 아, 이거는 지난번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아까 보고가 없길래 나는 보고를 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 축산법 101페이지 보시면 정부 측은 반대 의견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축산법에서 이것 삭제하는 부분인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간주 조항으로?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저희가 정부와 협의해서……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다시 한번, 의결하기 전에 아까 한우법 관련해서 축산법과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주 조항을 정부 측과 협의해서 그 문안을 성안하는 걸로 해서 하겠고, 그거는 저한테 위임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은 좀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일정이 결의안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예.

○소위원장 이원택 결의안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

**29.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 의원 등 58인 발의)(의안번호 2205424)

(12시11분)

○소위원장 이원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박지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소위 심사자료 14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결의안은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논의 필요입니다.

맨 마지막 14번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 설치된 기금은 매년 1000억 원의 기금 출연을 목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연평균 약 320억 원 수준으로 기금이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문1은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 및 법 정비를 촉구해서 3개월 안에 국회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문2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금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주문3은 국회가 기금의 취지에 맞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3페이지에 관련 부대 입법 개정안 등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결의안 문안은 조금 수정, 조정됐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정부가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원택** 아, 정부안…… 그러면 정부 측 의견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우선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곧 아마 대선이 있고 정부가 또 바뀌고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좀 적절치 않은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개선방안, ‘법 정비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3개 월 안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내용은 좀 바꿔서 그냥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법 정비 등에 대하여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이런 정도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1번 항목의 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1번 항목을 일부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기금 모금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기금 활성화를 위해……

○**정희용 위원**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반적인 개선방안……

○**소위원장 이원택** 쭉 밑줄 그어 놓으신 게……

아,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 정비 등에 대해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이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소위원장 이원택** 제가 여기 밑줄을 그어 놨는데……

○**정희용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정희용 위원님.

○**정희용 위원**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여야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국정감사 이후에 여야 위원님들 함께 토론회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했고 윤준병 위원님께서 법안도 발의를 두신 상태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의 이 결의안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농해수위에서 선행적으로 법안을 다룰 필요도 있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서 이 문제 해결책을 모색할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의안을 정부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추후에, 대선 이후에 바로 우리가 여야가 같이…… 여야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각 당에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법안도 다루면서 토론회도 해서 이 문제를 국정감사 이전에 정리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른 의견 없으면 정희용 의견을 받아서……

○정희용 위원 정희용 의견……

(웃음)

○소위원장 이원택 아니, 정희용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안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3호, 결의안 1, 2, 3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정도로…… 지금 문구 수정하시는 거지요? 그냥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이것 다짐한다 뭐 이렇게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다짐한다는 표현을 바꿉시다.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그렇게.

또 혹시 바꿔야 할 문구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1번 내용도 만약에 정부가 3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면 국회 결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정비 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렇게 그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는데 결의안이니까 정부로 하여금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협의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이를 위한 관련 법·재정비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면 주어를 국회로 바꿔야 됩니다. 주어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원택 국회로 바꿔야지, 그러면.

아니, 국회가 촉구하는 것보다는 원안이 낫겠네요, 주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러면 정부 측 안으로 정리하시지요.

그리고 3항의 ‘다짐한다’를 ‘협의한다’로 바꾸겠습니다.

다른 게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일단 한우법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본회의 통과되고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축산법하고 중복되는 내용 다 들어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야 될, 진짜 한우산업 진흥을 위해서 해야 될 그 내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정부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법안을.

○**소위원장 이원택** 예, 그래요.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회 직원 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 위원(7인)**

김선교 문금주 박덕흠 윤준병 이원택 임호선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범수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축산정책관 안용덕